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852호(號) 1929년(昭和 4) 11월 4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09호(號)

1929(昭和 4)년 11월 16일부터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도문동부선(圖們東部線)에 한(限)하여 일반영업용화물(一般營業用貨物)에 소형무개차(小型無蓋車: 10톤차[噸車])를 사용(使用)하는 것을 득(得)함. 이 경우에 있어서 차급화물(車扱貨物)의 운임(運賃)은 사용화차(使用貨車)의 표기하중톤수(標記荷重噸數)에 의(依)하여 이것을 계산(計算)함. 단 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26조(條)제2항(項)에 의(依)하여 다른 화물적재화차(貨物積載貨車)를 유차(遊車)로 대용(代用)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(當該) 유차(遊車)의 표기하중톤수(標記荷重噸數)는 이것을 가산(加算)하지 아니함.

1929(昭和 4)년 11월 4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